

<참고 1>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b>010. 일반공공행정</b>	<b>050. 교육</b>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b>120. 교통및물류</b>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b>060. 문화 및 관광</b>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124 해운·항만	
<b>020. 공공질서및안전</b>	062 관광	<b>090. 보건</b>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b>130. 통신</b>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131 방송통신
	024. 해경	<b>070. 환경</b>	093 식품의약품안전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b>140. 국토및지역개발</b>	
<b>030. 외교·통일</b>	072 폐기물	<b>100. 농림수산</b>		141 수자원
	031. 통일	101 농업·농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102 임업·산촌	143 산업단지	
<b>040. 국방</b>	073 대기	103 수산·어촌	<b>150. 과학기술</b>	
	074 자연	104 식품업		151 기술개발
	041. 병력운영	075 해양환경	<b>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b>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2. 전력유지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043. 방위력개선	<b>080. 사회복지</b>	112 산업기술지원	<b>160. 예비비</b>
044. 병무행정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1 예비비	

<참고 1> 성질별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목번호	목	내	역
100	1. 인 건 비		
110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2.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5. 초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8. 연가보상비	
		9. 명예퇴직수당	
		02. 기타직보수	
		03. 일용임금	
200	2. 물 건 비		
210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9. 광고료 및 광고료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1.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2. 제 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일·숙직비	
		07. 임차료	
		08. 연료비	

목번호	목	내역
100	1. 인 건 비	
110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2.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5. 초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8. 연가보상비 9. 명예퇴직수당 02. 기타직보수 03. 일용임금
200	2. 물 건 비	
210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9. 공고료 및 광고료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1.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2. 제 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일.숙직비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증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10-10 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10. 차량.선박비 - 차량 및 선박 유류대 -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습·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3. 시험연구비 14. 학교운영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15. 위탁사업비 16.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역
220	여비	<p>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 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p> <p>3. 의료비</p> <p>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p> <p>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시험관리비</p> <p>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p> <p>01. 국내여비</p> <p>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p> <p>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p> <p>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p> <p>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p>

목번호	목	내역
		<p>02. 국외업무여비</p> <p>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li> <li>-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li> <li>- 국제회의.국제행사 등</li> </ul> <p>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p> <p>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p> <p>03. 국제화여비</p> <p>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p> <p>2. 해외연찬여비</p>
230	특수활동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02. 관서업무비 01. 직급보조비 02. 직책수행경비 03. 특정업무경비 04. 교수보직경비
260	연구개발비	

목번호	목	내역
300	3. 이 전 지 출	
310	보 전 금	<p>01. 보상금</p> <p>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p> <p>02 배상금</p> <p>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p> <p>-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p>

목번호	목	내역
320	민 간 이 전	<p>-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p> <p>-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p> <p>-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p> <p>03. 포상금 등</p> <p>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p> <p>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p> <p>3. 예산절약 상여금</p> <p>01. 민간경상보조</p> <p>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p> <p>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p>

목번호	목	내역
		<p>02. 민간위탁금</p> <p>-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610-03목으로 편성)</p> <p>03. 연금지급금</p> <p>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지급여</p> <p>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110-02목)과 일용직(110-03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p> <p>04. 보험금</p> <p>-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p> <p>05. 이차보전금</p> <p>-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p> <p>06. 구료비</p> <p>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p> <p>-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p> <p>-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p> <p>-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p>

목번호	목	내역
330	자 치 단 체 이 전	<p>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복의 구입비</li> <li>-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li> </ul> <p>07. 민간자본보조</p> <p>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p> <p>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p> <p>08. 민간대행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li> </ul> <p>01. 자치단체 경상보조</p> <p>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p> <p>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p> <p>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p> <p>02. 자치단체교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li> <li>-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li> </ul> <p>03. 자치단체 자본보조</p> <p>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p>

목번호	목	내역
340	해 외 이 전	<p>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p> <p>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p> <p>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li> </ul> <p>01. 해외경상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li> </ul> <p>02. 국제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 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li> </ul> <p>03 해외자본이전</p> <p>“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li> <li>2. 해외 출자금</li> </ol>

목번호	목	내역
350	출연금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400	4.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20-03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역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10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 등의 경우는 420-06목, 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역
		<p>04. 감리비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p> <p>05.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p> <p>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p> <p>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p> <p>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제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p> <p>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p> <p>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p> <p>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p> <p>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p> <p>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p>

목번호	목	내역
430	유형자산	<p>06 건설가계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p> <p>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p> <p>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40목에 계상</p> <p>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p> <p>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p> <p>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p> <p>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p> <p>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p> <p>7.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p> <p>8. 전산자원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p> <p>9.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p>

목번호	목	내역
440	무형자산	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03. 차관물자용역대 -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 및 해외 훈련비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 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50	융자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역
460	출자금	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역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4. 국공채매입 05. 지방채매입 06. 기타 유가증권매입

목번호	목	내역
480	예탁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03. 공공기금 예탁금

목번호	목	내역
500	5.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 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역
		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03 차입금이자 04 예수금 원금 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목번호	목	내역
<b>600</b>	<b>6. 전 출 금 등</b>	
610	전 출 금 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04 비금융공기업 경상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06 감가상각비 07 당기순이익
<b>700</b>	<b>7. 예 비 비 및 기 타</b>	
710	예 비 비 및 기 타	01 예비비 02 예비금 03 반환금 기타